

#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15,150,492	39,454,515
일반회계	1,231,883,005	36,956,490
특별회계	83,267,487	2,498,025
기타특별회계	83,267,487	2,498,025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894,045	146,821
수질개선특별회계	9,401,118	282,034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098,238	392,947
기반시설특별회계	470,760	14,123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02,210	3,066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163,435	64,90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991,694	209,751
주택사업특별회계	101,857	3,056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3,067,750	1,292,033
지하수특별회계	2,976,380	89,291

제 2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318,165천원으로 한다.